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859 제안연월일: 2025. 3.

제 안 자: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45	김태호의원	2024. 11. 18.	제422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부
	2207854	강민국의원	2025. 1. 3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9)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25. 2. 24.)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 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3호"로, "보호책임자의"를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3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	
라 한다)를 <u>지정</u>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	1. <u>제31조제3항제3호</u>
보 <u>보호책임자의</u> 업무	-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u>및 피해 구제</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②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
	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
	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u>한다.</u>
<u> <신 설></u>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
	한 국내 법인
<u> <신 설></u>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신 설>

<u>③·④</u>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 ② (생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 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 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 을 하여야 한다.
-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3 -----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 4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 12. (생략)

⑤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

• 전화번호 및 전자운편 주소

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하지 아니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